

2023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사회적경제 분야 미래 성장을 주도할 역량 있는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을 선정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2023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을 모집합니다.

2023. 3. 20.

서울특별시시장

'23년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선정 개요

☐ 사업목적

-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경제 기업 중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우수 기업을 선정, 홍보 지원 등 을 통해 사회적경제 선도기업으로 육성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선정
- 선정대상 :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산규화망 및 기 인증 기업 (재)선정 가능)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지원 내용 :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로고 사용 및 홍보 지원 등
※ 사업비(보조금) 지원 없음
- 선정기간
 - 공고기간 : '23. 3. 20.(월). ~ 4. 3.(월)
 - 접수기간 : '22. 3. 20.(월). ~ 4. 3.(월) 18:00까지
 - 최종발표 : '23. 4월 중

○ 선정절차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서류 검토	심사위원회 개최	심사결과 통보
'23.3.20.~4.3. (15일간)	'23.4.3.~4.10. (8일간)	'23.4월 중	'23.4월 중

○ 평가방식

구 분	평가방식
정량 평가	○ 평가방식 : 성과지표(경영성과, 고용성과) ○ 평가배점(80)
정성 평가	○ 평가방식 : 사회가치 평가(정성평가) ○ 평가배점(20)

세부계획 ※ 신청기업 수 증가 등 상황에 따라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3. 3. 20.(월). ~ 4. 3.(월)
- 접수기간 : '23. 3. 20.(월). ~ 4. 3.(월) 18:00까지
- 접 수 처 :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이메일
- 제출방법
 - 제출서류: P.5~ 참조(순서에 맞게 정리하여 PDF 파일로 만들어 제출)
 - 이메일 접수 : xhflddb328@seoul.go.kr
- ※ 접수 기간 내 이메일 접수 건까지만 인정, 기간 연장 불가

☐ 자격요건

○ 공통요건

구 분	세부항목
조직형태	○ 법인 설립 2년 이상 경과 (공고일 직전 월 말 기준) * 선정기간 중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기간 만료 시 최종 선정일 내 사회적기업 인증 必 *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만 신청 가능
	○ 유급근로자 1인 이상(공고일 직전 월 말 기준) * 4대보험 가입기준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의 직계존비속 제외)
기업의 재무건전성	○ 최근 2년 연속 완전자본잠식이 없을 것('21년, '22년 자본잠식을 100% 이상인 경우 심사대상 제외) * '21.12월 말, '22.12월말 재무제표 기준 * (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100
기업 대표자의 도덕성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어야 함
	○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함
	○ 임금체불로 인한 소송 진행 사실이 없어야 함
	○ 배임, 횡령, 성폭력 등을 포함한 비윤리적 범법 행위 경력이 없어야 함
	○ 지원금 부정수급 등 위반사항 이력이 없어야 함

○ 부문별 주요 요건

구 분	세부항목(관련 법규 및 지침사항)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유형에 따른 요건 충족	○ 사회서비스제공형 :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 아래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지역 인적·물적 자원활용 유형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 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 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 소외 등 사회문제 해결 유형 : 해당 부분이 조직 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지역의 사회적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지원 하는 유형 :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 취약계층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20% 이상일 것
		○ 기타(창의·혁신)형 :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실현 여부를 위 각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심사위원회에서 사회적목적 실현여부 판단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출 것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수입(매출액)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서비스수혜자,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갖출 것
협동조합	유급근로자 고용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할 것
	정관·규약 등 구비 및 기재사항 준수여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갖출 것
	이윤의 사회적목적 사용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해산·청산시 잔여재산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 위해 사용할 것(상업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협동조합원 5인 이상, 1인당 출자좌수 30% 이하, 매년 잉여금 10% 이상 적립여부 등	
사회적 협동조합	공익사업의 비중이 40% 이상, 매년 잉여금 30% 이상 적립여부 등	
마을기업	기업 형태가 법인일 것	
	출자자(회원)는 최소 5인(5명인 경우 전원 지역주민)이어야 하며, 출자자의 70% 이상 지역주민일 것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이하,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일 것	
자활기업 (법인)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성원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1/5이상이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자활기업의 인정요건 및 지원요건을 충족할 것(유효기간내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 (재)인증 심사 항목 및 배점

○ 정량평가 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지표 (80)	경영성과(60)	· 매출성과 : 최근2년('21년~'22년)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
		· 영업성과 : 최근2년('21년~'22년)영업이익 및 영업이익 증가율
		· 당기순이익 : 최근2년('21년~'22년)당기순이익 및 당기순이익 증가율
		· 유동비율 : '22년말 기준 재무제표(당기, 전기 자본잠식률)
		· 자본잠식률 : '22년말 기준 재무제표(당기, 전기 자본잠식률)
	고용성과 (20)	· 일자리 창출 수 : 공고일 전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근로자(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제외)
		· 소득 창출 : 평균임금 기준
		· 정규직 비율
		· 근속연수

○ 정성평가 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사회 가치 (20)	(예비) 사회적 기업	고용 및 서비스 성과 (유형별 사회적 목적 실현)	일자리제공형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
			사회서비스제공형	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
			혼합형	취약계층 고용비율 및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인 지역사회공헌 실적지침 상 규정된 기준 실현여부
			기타 (창의·혁신)형	기타 사회적 목적 실현 정도
	(사회적) 협동 조합	목적달성	조합 설립목적 달성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목적 달성 정도
		교육훈련	조합원의 교육훈련	조합원 교육계획 수립 여부 및 실시 여부 (횟수 등 확인)
		협력실적	협력사업 추진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한 활동실적
	마을 기업	지역성	지역주민 출자율	출자자 중 지역주민 비율
			지역주민 고용률	고용인력 중 지역주민 비율
	자활 기업 (법인)	구성원		· 구성원 중 수급자, 차상위자 비율 · 취약계층 비율
		기타		· 직무환경, 활동 실적 등
공통	정성적 성과 (협력 및 연대)	지역사회 공헌	주 사업 이외 사회공헌 활동 정도	
		실질적 소셜 임팩트의 구현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재생, 남녀기회 평등, 사회구성원 회복, 공동체 이익 실현, 윤리적 생산과 유통,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존, 그 밖에 노 동·복지·인권·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 구성원 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 증진 등	

〈가점 부여〉

· 경영공시 : 1점 ※ 가점사항 기준일 : 공고일 직전 월 말

○ (재)인증 결정 : 심의위원별 채점 후 합산 **평균 점수 60점 이상 기업**

□ 최종선정 발표

- 일 시 : 2023. 4월 중
- 방 법 : 공문 및 선정기업 이메일 통보 등

제출서류

- ◆ 제출서류는 공통 및 기업 유형별로 작성하고 순서에 맞춰 정리하여 붙임 파일별 각각의 PDF 파일로 이메일 제출 필수
※ 신청서 접수 : xhflddb328@seoul.go.kr
- ◆ (예비)사회적기업이면서 법인형태가 (사회적)협동조합이거나, 마을기업 또는 자활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부문으로 신청**해야 함
- ◆ 법인 형태 4개 중 자활기업에만 해당하는 경우만 자활기업으로 신청해야 하며 자활기업이면서 다른 법인 형태에도 해당할 경우 해당 부문으로 신청해야 함
(예시. 자활기업이면서 협동조합인 경우 협동조합으로 신청)
- ◆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는 외부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증을 거쳐 **직인날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공통 제출서류>

1. (재)인증 신청서 1부
2. 성과보고서 1부(기업 공통 및 유형별 작성) 【서식 1】(엑셀서식 별첨)
※ 한글, 엑셀(별첨) 서식 모두 작성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서식 2】
4. 우수기업 신청 자격요건 검토표(Self Check) 1부 【서식 3】
5. 유급근로자 명부 1부 【서식 4】
6.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증명원(2022년 12월말 기준)
7. 재무상태표('21~'22년 결산보고서) 각 1부 ※ '21년(20~21년), '22년(21~22년) 보고서를 말함.
8. 손익상태표('21~'22년 결산보고서) 각 1부 ※ '21년(20~21년), '22년(21~22년) 보고서를 말함.
9. 2022년 12월분 급여대장
10. 지역사회 공헌실적 증빙자료 1부
※ 지역사회 공헌실적은 대표사례 1~2개 내외로 작성
11. 경영공시 증빙자료(경영공시 확인서 등) 1부 ※ 가점대상 기업만 제출
12. 자본잠식률 소명자료 및 개선계획 ※ 제출대상 기업만 제출(성과보고서 서식 참고)

<기업 유형별 추가 제출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 1-1. 일자리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로 인증(지정) 받은 기업
 - 2022년 12월말 기준 사회보험 가입자 증명원 및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각 1부
(2022년 사회보험 가입자 증명원은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
- 1-2.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중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비율로 인증(지정)받은 기업
 - 2022년 1~12월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증빙서류 1부
- 1-3. 기타(창의·혁신)형
 - 2022년 1~12월 사회적 목적 실현 관련 주 사업의 사업실적 증빙서류 1부
2.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사본 1부

■ (사회적)협동조합

- 1-1.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2021~2022년 조합의 사업을 이용한 조합원 증빙서류
- 1-2.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2021~2022년 주 사업 실적 증빙서류
2. 2021~2022년 사회적경제조직과 협력 실적 증빙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3.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서 또는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 마을기업

1. 출자자 명부
2. 고용인원 중 지역주민 고용 증빙서류(지역주민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등)
3. 마을기업 지정서 사본

■ 자활기업

1. 자활기업 인정서 사본 1부
2. 유효기간 내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1부
3. 사업 공고일 직전월 말 기준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기타사항

- ☐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서울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 서울시는 필요시 공모기업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및 홍보 콘텐츠 삭제
- ☐ 본 사업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개별기업에 대한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임
- ☐ 기타 서류제출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 02-2133-54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성과보고서

[재)인증 심사 성과보고서

기업명	
부문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인증연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2년 ☐ 신규지원

1. 유동비율 (2021~2022년 결산보고서 재무제표에 따라 작성)

구분	유동자산 [A]	유동부채 [B]	유동비율 [A/B*100]
2021년			%
2022년			%

2. 자본잠식을 (2021~2022년 결산보고서 재무제표에 따라 작성)

구분	자본금 [A]	자기자본 [B]	자본잠식율 [(A-B)/A*100]
2021년			%
2022년			%

* '21년, '22년 연속으로 완전자본잠식(100% 이상)인 경우 타 항목 점수 관계 없이 심사 탈락
 ** '21년, '22년 연속으로 자본잠식을 50% 이상인 경우 **소명자료 및 향후 개선계획 별도 제출 필수**
 *** '22년부터 완전자본잠식(100% 이상)상태로 들어선 경우 최저점 부여 예정(아래 예시 참고 예시))

21년 \ 22년	50%이상 100% 미만	100% 이상
50%이상 100% 미만	소명자료 및 개선계획 제출	최저점 부여 예정
100% 이상	소명자료 및 개선계획 제출	타 항목 관계 없이 심사 탈락

3. 매출액

· 2021년 매출총액 : []원

· 2022년 매출총액 : []원

4. 매출증가율

· 2022년 매출증가율 : {2022년 매출액 []원 - 2021년 매출액 []원} /
2021년 매출액 []원 × 100 = []%

5. 영업이익

· 2021년 영업이익 : []원
· 2022년 영업이익 : []원

6. 영업이익 증가율

· 2022년 영업이익 증가율 : {2022년 영업이익 []원 - 2021년 영업이익 []원} /
2021년 영업이익 []원 × 100 = []%

7. 당기순이익

· 2021년 당기순이익 : []원
· 2022년 당기순이익 : []원

8. 당기순이익 증가율

· 2022년 당기순이익증가율 : {2022년 당기순이익 []원 - 2021년 당기순이익 []원} /
2021년 당기순이익 []원 × 100 = []%

9. 근로자 수 (2021~2022년 12월말 기준)

구분	자체 고용 근로자	인건비 지원 근로자	계
2021.12월말			
2022.12월말			

* 4대 사회보험 가입한 근로자만 기록할 것

**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의 직계 존비속은 제외함

10. 근로자 1인당 월 평균급여 (2021~2022년 12월말 기준)

구분	급여총액 [A]	근로자 수 [B]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급여[A/B]
2021.12월말			
2022.12월말			

* 대표자 및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급여는 제외

11. 총 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 (2021~2022년 12월말 기준)

*대표자 제외

구분	정규직 [A]	비정규직 [B]	근로자 수 [C=A+B]	총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 [A/C*100]
2021.12월말				
2022.12월말				

12. 총 근로자의 평균 근속개월 수 및 기업 업력 대비 근속기간 비율

(2021~2022년 12월말 기준)

*대표자 제외

구분	전체 근로자 근속개월 수 합계[A]	총 근로자 수[B]	근로자 평균 근속개월 수 [C=A/B]	법인 업력 개월 수[D]	기업 업력 대비 근속기간 비율 비율[C/D]*100
2021.12월말					
2022.12월말					

13. 부문별 성과

13-1. [예비]사회적 기업

○ 사회적 목적 실현 정도 (2021 ~ 2022년 12월)

☞ 해당하는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작성할 것

일자리 제공형	구분	전체근로자 수 [A]	취약계층 근로자 수 [B]	비율 [B/A*100]
	2021.12월말			
	2022.12월말			

사 회 서비스 제공형	구분	전체 서비스 대상자 수 [A]	취약계층 서비스 대상자 수 [B]	비율 [B/A*100]
	2021.12월말			
	2022.12월말			

혼합형	구분	전체근로자 수 [A]	취약계층 근로자 수 [B]	비율 [B/A*100]
	2021.12월말			
	2022.12월말			
	구분	전체 서비스 대상자 수 [A]	취약계층 서비스 대상자 수 [B]	비율 [B/A*100]
	2021.12월말			
	2022.12월말			

지역사회 공헌형	구분	전체 근로자 수(A)	취약계층 근로자 수 (B)	비율 (B/A*100)
	2021.12월말			
	2022.12월말			
	구분	전체 서비스 대상자 수 (A)	취약계층 서비스 대상자 수 (B)	비율 (B/A*100)
	2021.12월말			
	2022.12월말			

기타(창의 ·혁신)형	2021년 주 사업의 실적 (횟수, 인원 등) (A)	2022년 주 사업의 실적 (횟수, 인원 등) (B)	성장률
	*성장률={B[]-A[]/A[] } ×100		

13-2. [사회적]협동조합

○ 조합의 사업을 이용한 조합원의 비율

구분	조합원 유형	조합원 총수(A)	사업 이용 조합원 수(B)	비율(B/A)
2021년 1월~12월	생산자			
	소비자			
	직원			
	후원자			
	자원봉사자			
계				
2022년 1월~12월	생산자			
	소비자			
	직원			
	후원자			
	자원봉사자			
계				

** 계산식 : [1~12월 조합의 사업을 이용한 조합원 수/전체조합원 수]/*100

*** 조합의 사업 이용 예시

소비자조합원 : 구매실적, 생산자조합원 : 공동구매, 시설 이용, 직원조합원 : 실제 근로 및 급여수령 실적 [*사회보험 가입 기준], 후원자조합원 : 후원 실적, 자원봉사자조합원 : 자원봉사 실적 등

○ 주 사업의 비중(사회적협동조합만 작성)

구분	주사업 유형	전체사업의 실적(A)	주사업의 실적(B)	주사업 비중(B/A)
2021년	취약계층고용형			
	취약계층서비스 제공형			
	지역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			
	혼합형			
2022년	취약계층고용형			
	취약계층서비스 제공형			
	지역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			
	혼합형			

☞ 주사업의 판단기준

- 취약계층고용형 : 취약계층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전체 인건비의 100분의 40이상 일 것 또는 취약계층 직원 수가 전체 직원 수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취약계층서비스제공형 : 주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이상 일 것
- 지역사업형 :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또는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 일 것
- 위탁사업형 :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예산일 것
- 기타공익증진형 :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또는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 위 각 유형에 해당하는 비율의 합이 100분의 40이상일 것

* 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 <제60조(사업의종류) 중 주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에 따른 신청기업의 주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에 따라 작성할 것

○ 조합원 교육훈련 실적

구분	교육일시	교육내용	교육대상	참석인원
2021년				
2022년				

○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실적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력한 활동실적

구분	기관명	협력내용(금액포함)	비고
2021년			
2022년			

* 증빙자료(계약서, 영수증 등)로 확인가능한 공동사업, 상호거래(매입만 반영), 사업지원 등의 활동실적만 작성

☞ 비교란에 공동사업, 상호거래, 사업지원,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

○ 조합의 경영정보 제공 실적 (증빙서류 별첨)

구분	제공일시	경영정보 내용	제공 방법
2021년			
2022년			

* 경영정보 : 사업계획, 결과 및 재무상황 등

** 제공방법 : 총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공시시스템 활용, 자체 온오프라인 공유시스템 활용

13-3. 마을기업

○ 전체 고용인원 중 지역주민의 고용비율(2022년 12월말 기준)

지역주민 근로자()명/전체근로자()명*100=[]%

* 지역주민 근로자는 실제 거주지 주소가 아닌 사업장 주소로 인정된 지역주민 근로자는 제외

○ 전체 출자금 중 지역주민의 출자금 비중(2022년 12월 말 기준)

지역주민 출자금()원/출자금 총액()원*100=[]%

연번	출자자	출자금액	비고
1			
2			
3			
4			
총계			

*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금을 출자금으로 간주함

* 지역주민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아닌 사업장 주소로 인정된 지역주민은 제외함

☞ 비교란에 지역주민 여부를 ○, ×로 표기

13-4. 자활기업

○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규모 [*공고일 직전월 말 기준 - 2023년 2월 말]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별도로 정한 자	계
인원 수[명]				

14. 각종 보조금 지원 이력 (2022년 1월 ~ 2022년 12월)

지원기관 [정부부처· 지자체]	지원사업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 총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총계			백만원

15. 경영공시 여부

공시여부	공시한 곳	공시일자
유 / 무		

16. 지역사회 공헌 실적 (2022년 실적 기준)

* 사업보고서, 언론 홍보자료 등으로 확인 가능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 실적만 작성

17. 위 1~16번 항목 이외에 Social Impact 등 정성적 사업성과는 무엇인지 자유롭게 기술하세요. [형식 및 분량 제한 없음, [공고문 4페이지 정성평가 항목 참고](#)]

✎ 작성 시 유의사항

- * 질문의 답이 소수를 포함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작성할 것
- * 각 질문에서 정한 '해당기간' 을 정확히 확인하여 그에 따라 작성할 것

2023. . .

작성자 :

[인 또는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사후관리 등을 위해 사업참여신청자 정보 수집·이용
 - 우수사례 발굴 및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정보 수집·이용
 - 사업홍보 :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지원사업 안내 및 자료발송 등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 기타 선정·지원과 관련된 개인정보
-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서울시, 자치구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효과적인 사업운영과 관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 기타 선정·지원과 관련된 개인정보
-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신청 자격요건 검토표(Self Check)

1. 공통요건

구분	세부항목	기준	내용작성
조직형태	○ 법인 설립 2년 이상 경과 (공고일 기준) * 선정기간 중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기간 만료시 최종 선정일 내 사회적기업 인증 必 *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만 신청 가능	부문별 적용 기준 따라 요건 충족	
	○ 유급근로자 1인 이상 (공고일 기준) * 4대보험 가입기준(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제외)	1인 이상	
기업의 재무건전성	○ 최근 2년 연속 완전자본잠식이 없을 것('21년, '22년 연속으로 자본잠식률 100% 이상인 경우 타 항목 점수와 관계없이 심사 탈락) * (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100 * '21년 12월 말, '22년 12월 말 재무제표 기준	자본잠식률 100%	
인증 등 요건 준수	○ 각 분야별 인증, 지정, 인정 시 요건 충족 * 다음 페이지의 「분야별 인증 등 요건」 참고	요건 준수	* 충족내용 각 요건별 비율 등 구체적 기록할 것
기업 대표자의 도덕성	○ 노동관계법령, 사업수행관련법령 위반사실이 없어야 함	있음/없음	
	○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함	있음/없음	
	○ 임금체불로 인한 소송 진행 사실이 없어야 함	있음/없음	
	○ 배임, 횡령, 성폭력 등을 포함한 비윤리적 범법 행위 경력이 없어야 함 (대표자)	있음/없음	
	○ 지원금 부당사용 등 위반사항 이력이 없어야함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해당. 단, (사회적)협동조합은 국고 등 지원금을 받은 경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의 기준에 준하는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제외 ☞ 위반사항 이력 적용기준 -사회적기업 · 각종 재정지원사업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중 약정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 각종 재정지원사업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조치 중 경고 및 부정수금액 환수, 약정해지 및 부정수금액 환수, 형사 고발에 해당하는 경우 -마을기업 · 마을기업 시행지침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른 약정해지, 부정수금액 환수, 고발에 해당하는 경우	있음/없음	

2. 부문별 인증 등 주요 요건

부문	세부항목(관련 법규 및 지침사항)	내용작성
(예비) 사회적기업	○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제공비율 30% 이상 ○ 혼합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제공비율이 각 20% 이상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따른 요건 충족 ○ 지역사회공헌형 : 아래 세가지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지역 인적·물적 자원활용 유형 : 해당 지역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의 해당 지역 취약계층 제공비율 20% 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 소외 등 사회문제 해결유형 :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지역의 사회적목적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 : 해당 부분의 수입·지출이 전체 수입·지출의 40% 이상일 것 ○ 창·혁신형 : 사회문제해결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특성상 취약계층고용 또는 사회서비스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사회적목적 실현여부판단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출 것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총 수입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서비스수혜자,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갖출 것
	유급근로자 고용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할 것
	정관·규약 등 구비 및 기재사항 준수여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갖출 것
	(상법상회사)이윤의 사회적목적 사용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청산시 잔여재산의 2/3 이상 사회적목적에 위해 사용할 것
	협동조합	조합원 5인 이상, 1인당 출자좌수 30% 이하, 매년 잉여금 10% 이상 적립여부 등
	사회적 협동조합	공익 관련 사업의 비중이 40% 이상, 매년 잉여금 30% 이상 적립여부 등
마을기업	조직형태가 법인일 것	
	출자자(회원)는 최소 5인(5명인 경우 전원 지역주민)이어야 하며, 출자자의 70% 이상 지역주민일 것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일 것	
	고용인력의 70% 이상을 해당지역 주민 고용(권장)	
자활기업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성원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1/5이상이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자활기업의 인정요건 및 지원요건을 충족할 것(유효기간내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 위 내용 외 기타 세부기준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름

위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기업 대표

(인)

【서식 4】유급근로자 명부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근속기간 (개월 수)	주당 근무 시간	월평균 급여액 (천원)	취약계층 구분 기재	4대 보험 가입 여부	미가입 시 사유	인건비 지원 여부	임원 겸직 여부	출자 여부	지역주민 또는 조합원 여부	대표자 와의 관계

*취약계층 구분: 1. 저소득자 2. 고령자 3. 장애인 4. 성매매피해자 5. 청년, 경력단절 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6.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보호대상자 9. 결혼이민자 10. 갱생보호 대상자 11. 범죄구조 피해자

**대표자와의 관계 :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등 친인척 3. 기타 (직접기록)

***지역주민 : 지역주민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아닌 사업장 주소로 인정된 지역주민은 제외함

****2023년 2월말 기준으로 작성할 것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